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발 명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지식재산 금융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역량 있는 민간 기관이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신규 진입하여 양질의 평가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을 완화한 발명의 평가기관 2단계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명의 평가기관이 1단계 기관부터 진입하여 2단계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발명의 평가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발명의 평가기관 2단계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 규정(안 제12조 제2항 개정, 안 별표 12 신설)

- 1) 종전에 단일 단계로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1단계 발명의 평가기관과 2단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지정요건은 별표 12를 신설하여 규정함
- 2) 별표 12 신설안에 발명의 평가기관이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상시 고용 요건을 1단계 평가기관의 경우는 5명 이상,

2단계 평가기관의 경우는 10명 이상으로 규정함

3) 1단계 발명의 평가기관의 전문인력 구성은 변리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명 이상 및 발명의 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지정요건을 완화함

4) 2단계 발명의 평가기관의 전문인력 구성은 변리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및 발명의 평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종전 지정요건을 유지함
나. 발명의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실적 및 품질 등을 점검하기 위한 근거 규정(안 제12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개정)

1) 특허청장은 발명의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 전문인력 운영실태 등을 점검 및 평가하고, 평가업무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평가수행 범위에 차등을 두거나 평가건수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다. 발명의 평가기관에 대해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14조 제1항의 별표 7에 규정(안 별표 7 개정)

1) 발명의 평가기관 점검 결과, 평가업무의 품질 또는 실적 등이 미흡할 경우에는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별표 7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 관련 근거를 규정함

2) 발명의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품질 미흡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함

- 3) 발명의 평가기관이 스스로 평가기관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4) 특허청장은 발명의 평가기관이 지정취소 사유 해소를 위한 자구 계획을 제출한 경우, 이를 심사한 후 지정취소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2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단계 평가기관

2. 2단계 평가기관

제12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⑦ 특허청장은 매년 평가기관의 가치평가보고서, 전문인력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평가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⑧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의 전문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관의 평가수행에 차등을 두거나 평가건수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명의 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제12조 제2항의 개정 규정 및 별표 12 신설 규정에 따라 지정된 2단계 평가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2조 제2항의 개정 규정 및 별표 12 신설 규정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발명의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 7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u>②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u>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u> <u>가.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u> <u>자격을 획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u> <u>3명 이상</u> <u>나.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명 이상</u> <u>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u> <u>3. 발명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u> ③ ~⑥ (생략)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u>②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2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u>1. 1단계 평가기관</u> <u>2. 2단계 평가기관</u> ③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설>

⑦ 특허청장은 매년 평가기관의 발명의 평가보고서, 전문인력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평가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⑧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의 전문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관의 평가수행에 차등을 두거나 평가건수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 제2항 관련)

1. 1단계 평가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요건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1)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획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

2)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

나.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발명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2. 2단계 평가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요건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1)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획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2)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명 이상

나.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발명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4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마.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스스로 평가기관의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평가기관의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평가기관으로부터 그 지정취소 사유 해소를 위한 자구계획을 제출받아 심사한 후 지정취소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지정 취소			
나.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평가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평가기관 점검결과 평가역량,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업무 정지 6개월 고시에 의함	지정 취소 고시에 의함	 고시에 의함	

전문인력, 연간 평가실적 등이 부족하여 평가업 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 유가 발생한 경우 3) 평가기관이 스스 로 평가기관의 지 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 여 평가업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정 취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연 락 처	042-481-5807